

서울연구원
정책리포트

140

2013.4.29

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배출특성 (PM · NOx)을 고려한 단계별 관리방안

김운수

서울연구원
선임연구위원

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배출특성(PM · NOx)을 고려한 단계별 관리방안

2013. 4. 29 제140호

김운수 /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< 목 차 >

요약

- I . 경유자동차의 배출특성(PM·NOx) 진단
- II . 국내·외 경유자동차 관리사례 분석
- III .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단계별 PM·NOx 관리방안

요 약

최근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(WHO)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. 특히 경유자동차는 서울시 미세먼지(PM)의 65%, 질소산화물(NOx)의 32.9% 배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어,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· 질소산화물 배출의 지속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. 따라서 ‘생활공감, 시민행복’을 가늠하는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PM과 이산화질소(NO_2) 오염도 기여도가 높은 경유자동차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.

경유자동차의 운행특성, 배출특성에 맞는 친환경 관리가 필요

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규모가 대형일수록, 노후도가 클수록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. 이러한 배출특성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결과에서 제작연도가 오래될수록 부적합 비율이 높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 이는 시민의 건강 위해도 개선을 위해 향후 노후 경유자동차의 초과배출 PM · NOx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 단계별로 관리가 필요함을 대변하고 있다.

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관리 전략의 보완이 필요

미세먼지 배출총량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배출비중은 높은 수준이다.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, 매연여과장치(DPF) 부착,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, 노후차량 조기폐차 유도 등 ‘선택과 집중’ 전략을 추진한 결과 1995년 $78\mu\text{g}/\text{m}^3$ 에서 2012년 $41\mu\text{g}/\text{m}^3$ 으로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. 다만, 이산화질소(NO_2) 농도는 다양한 NOx 배출 저감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. 현재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‘선택과 집중’ 전략의 한계를 고려할 경우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인체건강의 위험도가 큰 PM과 NO_2 농도 기여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환경관리 전략은 보완이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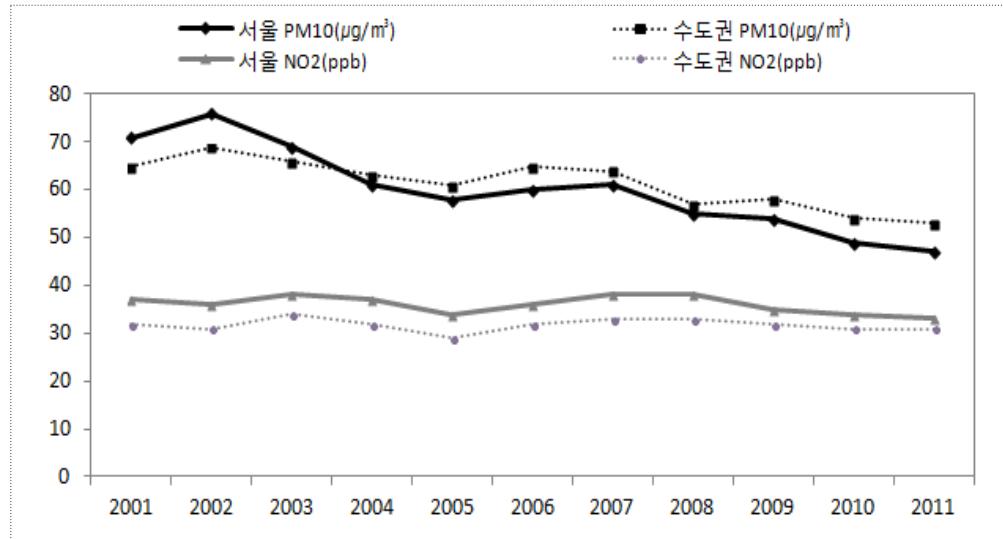
경유자동차의 생애주기에 기반을 두는 단계별 특화 관리방안을 마련

서울시 PM10, NO_2 평균농도 개선의 한계상황을 벗어나고, 세계도시 서울의 환경 비교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화관리의 보완이 요구된다. 경유자동차의 생애주기별 PM · NOx 배출특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강화,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(제작단계), 저공해화 유도,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, PM · NOx 동시 저감장치의 상용화(운행단계)와 함께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, 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따른 배출등급제도 도입, 저공해화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등 정책 융합이 필요하다. 또한 공해차량제한지역(LEZ)의 운영을 재설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의 PM · NOx 배출 저감 및 친환경 운전조건이 확보되도록 한다. 그리고 자동차형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저감,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NO_2 검사항목 추가, 자동차의 실제 주행조건을 반영한 배출가스 검사, 매연여과장치(DPF)의 인증조건 보완 등 경유자동차의 PM · NOx 배출 관리요건을 강화한다.

I . 경유자동차의 배출특성(PM·NOx) 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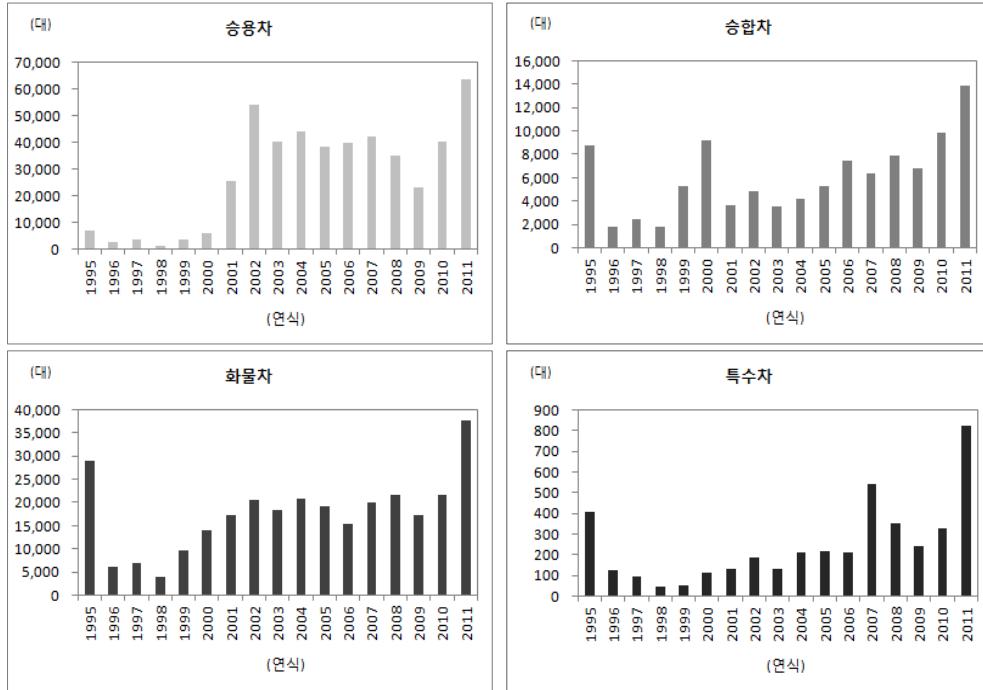
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

- PM·NOx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 대책의 보완이 필요
 - 세계적으로 연간 사망자의 2.4%인 약 13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였으며, 폐암 사망의 9%, 심장질환 사망의 5%, 호흡기질환 사망의 1%가 대기오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(WHO, 2008)
 - 분석연구의 결과, 사망률과 직경 $10\mu\text{m}$ 이하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대여명이 현저히 감소하여, 매년 호흡기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추세
 - 경유자동차는 서울시 미세먼지(PM)의 65%, 질소산화물(NOx)의 32.9% 배출비중을 차지하여,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· 질소산화물 배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
 - 대기환경 개선 전략의 업그레이드 조건으로 PM10 이외에 인체 위해성이 큰 PM2.5, NO₂ 관리 등 경유자동차 대상의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, 경유자동차 배출 PM10(특히 PM2.5), NOx의 개별 관리에서 PM · NOx의 통합 특화관리로 전환이 필요
- 미세먼지의 농도 개선에 비해 이산화질소의 농도 개선은 한계에 직면
 - '선택과 집중' 전략을 바탕으로 입자상물질(PM10)의 오염도는 서울에서 매년 뚜렷한 개선경향을 보이고 있으나, 질소산화물의 오염도는 특별대책 시행 이후에도 정체 또는 개선이 미흡

[그림 1] 서울시 및 수도권의 연도별 PM10 및 NO₂ 농도 분포 변화

경유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PM · NOx 배출량도 증가

-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, 경유자동차 등록 비율은 29.4% 수준으로 샌프란시스코(3%), 도쿄(4%) 등 경쟁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
 - 차종별로 경유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, 승용 중대형 경유차가 52.5%(승용 다목적형 승용차(RV) 40%), 화물차가 34.2%, 승합차가 11.8%를 차지
 - 특히 중대형 화물차와 승합차의 7년 이상 노후자동차 비율이 높아 PM · NOx의 초과배출 기여도가 높은 실정
 - 중형 승합차(15인 초과~50인 이하)가 64.4%로 노후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파악되며, 중형 화물차(1톤 초과~5톤 미만)와 경소형 화물차(1톤 이하)가 각각 63.6%, 56.7%의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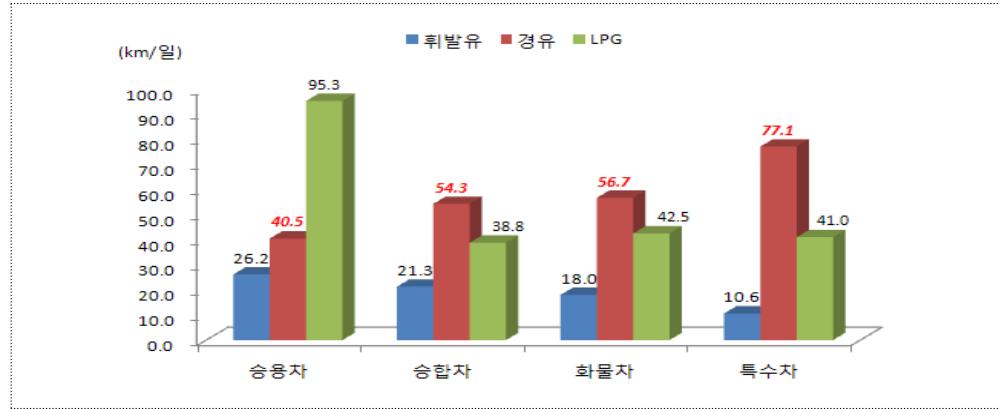
자료 : 국토해양부, 자동차 통계자료(2011)

[그림 2] 서울시 차종별 경유자동차의 연식별 등록대수(2011년)

<표 1> 서울시 차령 7년 이상 경유자동차의 차종별 등록대수(201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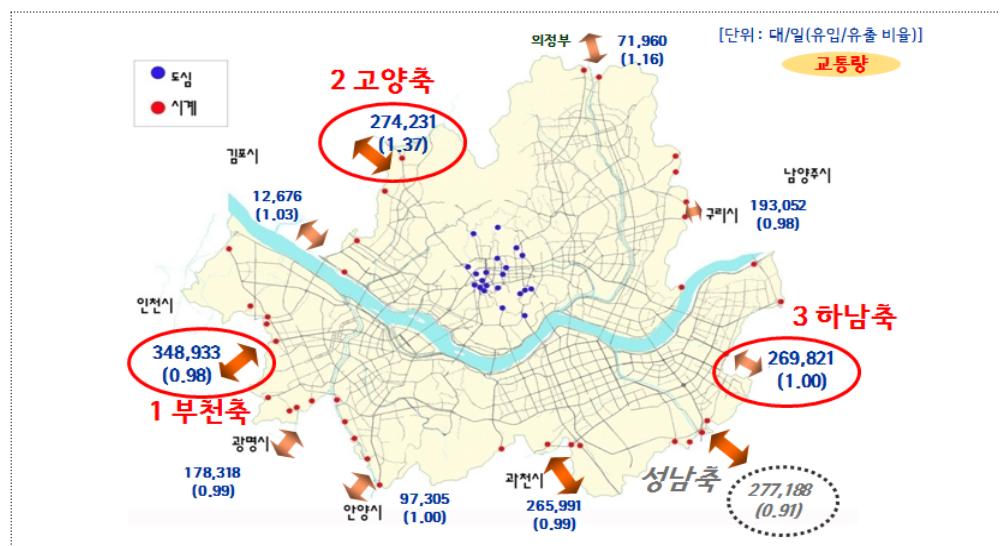
| 구분 | 소계 | 승용차 | | 승합차 | | | 화물차 | | | 특수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경소형 | 중대형 | 소형 | 중형 | 대형 | 경소형 | 중형 | 대형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총계 | 874,928 | 9,171 | 459,433 | 89,672 | 3,702 | 9,536 | 214,585 | 35,145 | 49,474 | 4,210 |
| 7년 이상 | 443,435 (50.7) | 1,828 (19.9) | 223,587 (48.7) | 44,535 (49.7) | 2,384 (64.4) | 3,803 (39.9) | 121,575 (56.7) | 22,253 (63.6) | 21,761 (44.0) | 1,709 (40.6) |

- 경유 사용 자동차의 1일 평균주행거리가 휘발유, LPG,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다소 높은 수준
 - 서울시 자동차는 1대당 1일 평균 44.0km를 운행하고 있으며, 특수 경유자동차 77.1km/일, 화물 경유자동차 56.7km/일, 승합 경유자동차 54.3km/일 순으로 조사(교통안전공단, 2011)



[그림 3] 서울시 차종별 · 연료별 1대당 1일 평균주행거리(201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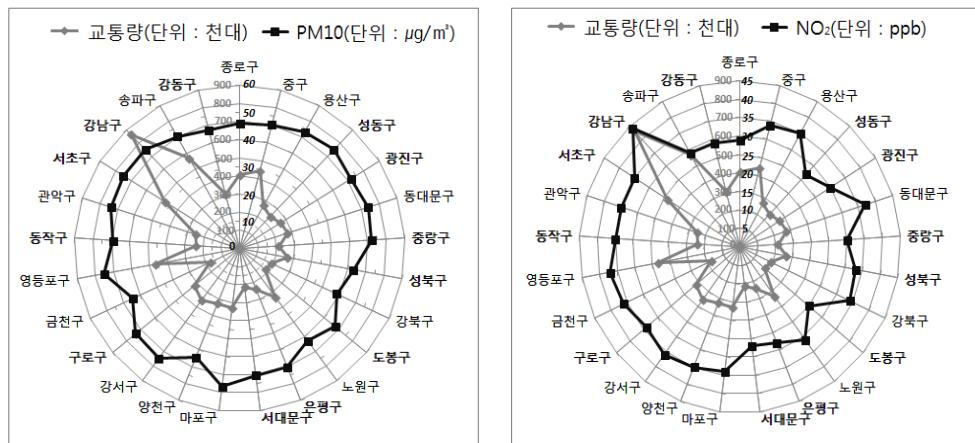
- 서울시의 주요 교통축별 교통량 현황을 살펴보면, 부천축이 348,933대/일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 고양축 274,231대/일, 하남축 269,821대/일 순으로 조사
- 고양축은 서울로 유입하는 차량이 서울에서 나가는 유출 차량보다 더 많으며(유입/유출=1.37), 반대로 성남축은 서울에서 나가는 유출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(유입/유출=0.91)



자료 : 서울특별시 · 서울지방경찰청, 2012, 2011년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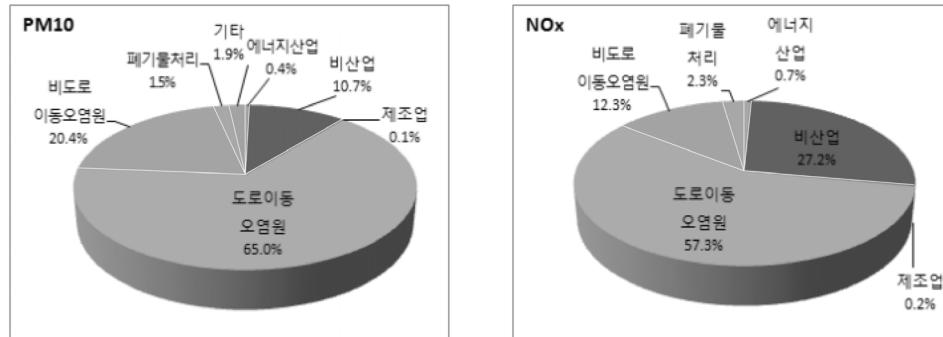
[그림 4] 서울시의 주요 교통축별 전체 교통량

- 2010년 여객 기종점 통행량(O/D) 조사자료에 따라 자치구별로 수단별 교통량을 산정한 결과 강남구, 송파구, 서초구 지역에서 교통량이 많았으며, 교통량이 많은 자치구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
- 광역버스는 서초구, 소형 화물차는 영등포구, 중대형 화물차는 강서구에서 유·출입량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
- 지역별 교통량의 편차, 지역별 유·출입 등의 운행특성을 고려한 경유자동차의 교통수요 관리가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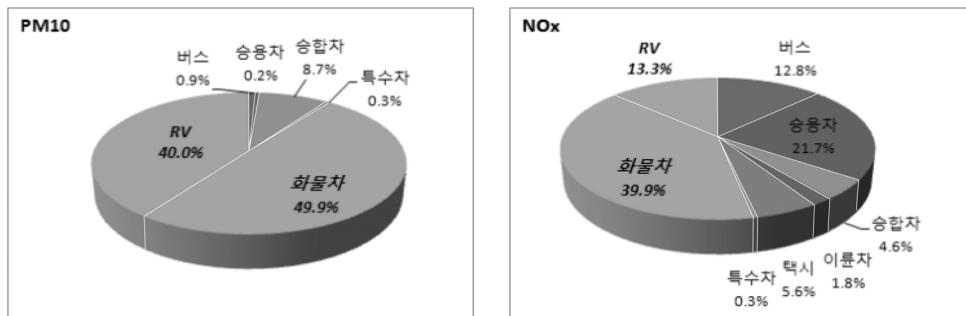
[그림 5]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 교통량과 미세먼지, 이산화질소의 농도 비교

- 서울시 PM10, NO₂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이 주된 배출원이며, 특히 경유자동차가 절대적으로 기여
- 2009년 대기정책지원시스템(CAPSS)의 배출량 기준으로 도로이동오염원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65.0%,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7.3%를 차지
 - 도로이동오염원에서 경유자동차의 배출비중은 미세먼지가 100.0%, 질소산화물이 약 57.4%



[그림 6] 배출원별 미세먼지 · 질소산화물 배출비율 비교(2009년 기준)

- 경유 화물차의 배출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, 승합차의 기여도가 낮아진 반면, RV차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에 대한 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RV 차량에 대한 새로운 환경관리가 필요
- 중형 화물차의 NOx 배출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, 덤프트럭의 비율이 12~15%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중형 화물차 및 자동차형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관리대책이 필요



[그림 7] 서울시 도로이동 오염원 부문의 차종별 미세먼지 · 질소산화물 배출비율(2009년 기준)

- 경유자동차 규모가 대형일수록, 노후도가 클수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경향
 - 2009년 연식 기준으로 미세먼지의 복합배출계수는 중형 화물차가 1.61g/km,

특수차가 0.08g/km, 대형 화물차가 0.07g/km 수준

- 질소산화물의 복합배출계수는 특수차가 4.75g/km, 경유 대형 화물차가 4.48g/km, 대형 경유 승합차가 2.70g/km, 중형 경유 화물차가 1.61g/km 수준
- 연식별 중형 화물차,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비교하면, 1996~1997년 연식의 화물차가 2009년 연식보다 미세먼지는 중형이 15배, 대형이 22배 정도 더 많이 배출되고, 질소산화물은 중·대형 모두 5배 정도 더 많이 배출



자료 : 수도권 대기환경청, 2011,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지침

[그림 8] 서울시의 차종별 미세먼지 · 질소산화물 배출계수(2009년 연식 기준)

-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종합검사(배출가스 정밀검사) 분석결과(2011년)를 살펴보면 제작연도가 오래될수록, 평균주행거리가 높을수록 배출기준 부적합 비율이 증가

II. 국내·외 경유자동차 관리사례 분석

국내에서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화관리를 추진 중

-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저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제작차를 관리
 - 경유자동차 제작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, 2006년 EURO IV에서 2009년 EURO V로 기준이 강화되었고, 2014년에는 EURO VI 기준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
 - 2009년부터 EURO V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PM의 집중 관리와 함께 후 처리 장치의 적용으로 NOx 배출 관리를 강화
 -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, 택시, 화물차, 이륜차 등 '서울형 그린카'의 상용 확대 계획 수립, 충전인프라 구축, 민간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, 그린카 주차면 지정 등 그린카 보급과 관련된 법령·제도의 정비를 추진
- 저공해화 사업, 공해차량제한지역(LEZ) 운영을 통하여 운행차를 관리
 - 배출가스 보증기간(총중량 3.5톤 이상 2년, 총중량 3.5톤 미만 5년)이 경과한 특정 경유자동차 가운데 총중량 2.5톤 이상이고 차령이 7년 경과한 경유자동차는 저공해화 사업 추진대상으로 선별하여 관리
 -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의무화가 시행(2008.1.1)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의 개조 비용, 조기폐차를 지원
 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공해차량제한지역(LEZ)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,

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, 시행시기, 과태료 부과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서울, 경기, 인천의 3개 지자체 조례에 각각 위임되어 LEZ 가 지정 · 운영

- 수도권(서울시, 경기도, 인천시)에 등록된 저공해화 조치 미이행 차량은 당해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되면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

<표 2> 수도권 3개 시 · 도별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운영현황

| 구분 | 서울 | 인천 | 경기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법적 근거 |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|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|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|
| 시행일자 | 2010.11.1 | 2010.7.1 | 2010.4.1 |
| 대상지역 | 전 지역 | 옹진군 영흥면 제외 | 24개 시 (광주, 안성, 포천, 여주, 양평, 가평, 여천 제외) |
| 적용대상 | 대기관리권역 등록차량 | 대기관리권역 등록차량 | 대기관리권역 등록차량 |
| 담당부서 |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저공해사업팀 |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팀 | 환경국 기후대기과 교통환경팀 |
| 단속방법 | 무인 단속시스템 (6개 지점, 22대 카메라) |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인력단속 (8개 지점) | 기존 CCTV 활용 (1,471대) 자치단체별로 차이 |
| 단속현황 | 1,670대 (2012.3~2012.11) | 23대 (2010.7~2012.6) | 44대(2010) 55대(2011) 10대(2012.6) |
| | (서울 92, 경기/인천 1,578대) | (서울 3, 인천 16, 경기 4대) | - |
| 과태료 부과 | 위반사실 통지(행정조치) 과태료 부과 없음 | 위반사실 통지(행정조치) 과태료 부과 없음 | 위반사실 통지(행정조치) 과태료 부과 : 1대(2012) |

□ 자동차 배출가스의 종합검사 시행

-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이중적인 검사 방지 및 시민의 불편 해소, 중복 투자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함께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,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

해외 대도시에서는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특화관리

- 해외 대도시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주요 배출원은 도로/비도로 이동오염원이며, 이동오염원 배출 PM · NOx 저감대책의 기본 정책방향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특화관리에 집중
 - 런던 : NOx 배출량의 약 46%, PM10 배출량의 79%
 - 도쿄 : NOx 배출량의 약 50%, PM10 배출량의 25%
 - 베를린 : NOx 배출량의 약 40%, PM10 배출량의 29%

<표 3> 해외 대도시의 경유자동차 관리사례 비교

| 구분 | 관리대상 오염물질 | 제작차 관리 | 운행차 관리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런던 | PM10 NO ₂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출허용기준 강화 • 저공해 자동차 보급(전기차, 하이브리드차, Euro 5 이상) •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(ODB) 도입 : Euro 3 제작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대형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유도(DPF 장착, 엔진 개조) • PM ·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 실시 • 혼잡통행료 부과 • 저배출지역(LEZ) 운영 : LEZ 기준의 단계적 확대 및 강화, NOx 기준 추가 검토 • 자동차 공회전 단속 • 미세먼지 저감장치 인증기준에 NO₂ 배출제한 기준 추가 검토 |
| 도쿄 | PM10 NO ₂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출허용기준 강화 • 저공해자동차(전기차, 클린디젤) 보급 : 인센티브 지원제도 • 저공해차 도입 의무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 NOx · PM법 : PM과 NOx 배출기준 만족 차량만 등록이 가능 • PM · NOx 동시 저감장치 상용화 • 자동차 공해감시원(Gメン) 운영 : 비정기적인 검사 및 단속으로 공해차량 관리 • PM 기준 부적합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• 저공해화 유도(DPF 장착, 엔진 개조, 노후차 폐차 등) : 지원 제도 및 인센티브 • 저감장치 장착에 의한 다른 대기오염물질 증가 측정오차 범위 설정(10%) • 자동차 공회전 단속 |
| 베를린 | PM10 PM2.5 NO ₂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차 ·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• 저공해자동차 보급(Euro 5 이상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경지역 운영 : 기준의 단계적인 확대 및 강화, NOx 기준 추가 검토, 배출등급과 연계하여 추진 • 저공해화 유도(DPF 장착) • 속도 제한 • 경유버스에 SCRT 시험장착 모델링 |
| 캘리포니아주 | PM10 NO ₂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출허용기준 강화 •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(ODB II) 부착 의무화 • 저공해자동차(연료전지, 천연가스 자동차) 보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저공해화 유도(DPF 장착, 엔진 개조, 노후차 폐차 유도) • DPF 인증 시 미세먼지 배출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한 NO₂ 배출 증기량 제한 |

□ 자동차의 단계별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적용

- 신규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, 노후자동차의 저공해화 유도, 유지관리(I/M), 조기폐차 등 자동차의 단계별 관리까지 다양한 저감대책을 적용
-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, 하이브리드/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추진 및 공공부문 자동차 대상 우선 보급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등 제작차를 관리
- NOx 배출이 강화된 Euro 5 및 Euro 6 기준으로 제작된 저공해 자동차의 도입, 전기차의 보급, PM · NOx 동시 저감장치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수행, 환경지역 기준에 NOx 기준 추가(런던, 베를린) 등 PM · NOx 동시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
- 운행차 특화관리로는 저감장치 부착, CNG 버스로의 교체, 엔진 개조 등 저공해화 사업이 기본적이며, 저공해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운행제한제도를 시행(런던, 도쿄, 베를린)
- 최근 PM 관리방향을 PM10에서 PM2.5로 전환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체건강 유해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

III.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단계별 PM·NOx 관리방안

경유자동차의 PM·NOx 배출특성을 고려한 관리대책의 보완이 필요

□ 경유자동차의 PM · NOx 배출저감 관련 특화관리 전략의 기본방향

- 경유자동차의 생애주기별 PM · NOx 배출특성에 따라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, 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따른 배출등급제도 도입, 저공해화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등 정책 융합이 필요
- 공해차량제한지역(LEZ)의 운영을 재설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의 PM · NOx 배출 저감 및 친환경 운전조건을 확보
- 자동차형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저감,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NO₂ 검사항목 추가, 자동차의 실제 주행조건을 반영한 배출가스 검사, 매연여과장치(DPF) 인증조건 보완 등 경유자동차 PM · NOx 배출 관리요건을 강화

□ 주요 추진전략과 과제

| 주요 전략 | 추진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생애주기별 관리방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- 경유자동차 배출등급 관리제도 도입 - 저공해화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|
|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운영시스템 재설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- 관리대상 및 기준 확대 - 공간범역 확대 및 지역 세분화 - 교통수요관리 대책과 연계하여 운영 - 참여유인 정보 제공 |
| 경유자동차 PM·NOx 배출 관리요건의 강화방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동차형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관리방안 - 경유자동차의 NOx 및 NO₂ 배출가스 검사기준 추가 - 자동차 검사제도의 Off-cycle 모드 관리절차 개선 - 매연여과장치(DPF) 인증제도 보완 |

생애주기별로 경유자동차의 관리방안을 추진

□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

-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기본흐름은 친환경 운전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I/M(배출가스 일상 점검)에 있으며,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실정
- 자동차 배출가스의 점검 및 정비 명령의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적용하여 친환경 운전조건을 유도

□ 경유자동차의 PM · NOx 배출등급 관리제도를 도입

- 운행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환경등급을 분류한 후 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
 -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통합전산시스템(VIMS)을 통해 검사방법별(무부하 · 부하, 1~3모드), 배출가스별로 관리
 -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연식, 배출수준을 고려하여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등급을 구분하고, 이를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확인정보로 활용
- 향후 배출허용기준을 미달하는 오염물질 과다배출 자동차의 운행제한(negative enforcement) 지역인 공해차량제한지역(LEZ)에서 경유자동차의 배출등급제도를 적용하고, 배출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적정 배출 자동차만 운행이 가능한(Positive enforcement) 환경지역(EZ)으로 변경을 검토

□ 저공해화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

- 차량 이력관리와 연계된 제어장치 관리, 중고품 재사용에 대한 기준, 배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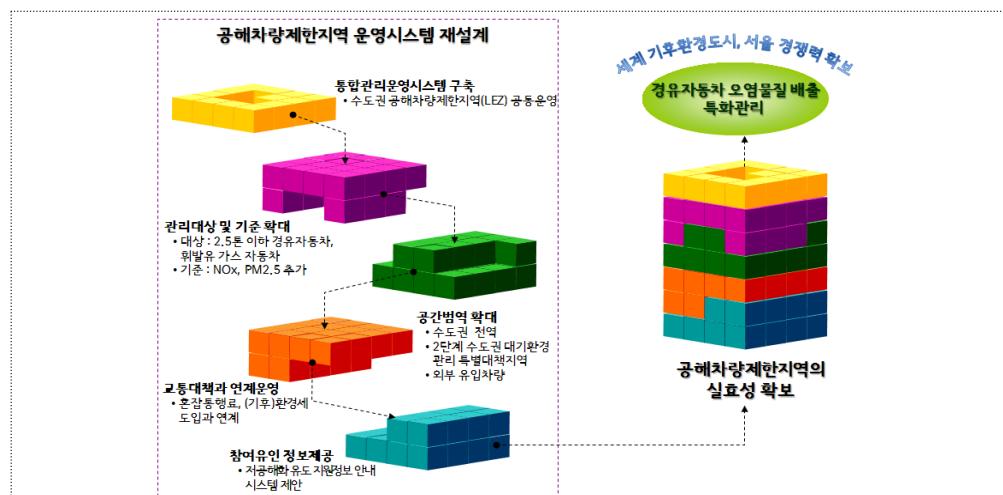
가스 보증기간 경과 장치에 대한 관리 등 배출가스 모니터링이 필요

-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관리를 위하여 DPF를 장착한 모든 차량에 청소주기 등 고장의 사전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원격진단장치(TDS, Tele-Diagnosis System)의 부착을 검토

공해차량제한지역의 운영시스템을 재설계

□ 현행 공해차량제한지역(LEZ)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

- 서울 지역 내부 및 경계 유·출입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특성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관리 정보 미구축,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경유자동차 매연여과장치 미부착 및 PM·NOx 통합 감축수요 대응 미흡 등으로 LEZ 운영은 가시적 성과가 미미
-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현행 LEZ 제도는 대기환경 개선 목표농도의 달성, 건강 위해도가 큰 초미세먼지(PM2.5) 및 이산화질소 환경수준 관리 등에는 한계를 보여 재설계 운영이 필요



[그림 9]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(LEZ)의 실효성 확보 방안

□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

- 수도권의 공해차량제한지역(LEZ) 공동 운영과 함께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기초자료 및 자동차 이력 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
- 광역 유·출입 통행 영향을 고려한 통합 단속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수도권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
-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조수단으로 배출가스 원격자동측정장치(Remote Sensing Device, RSD)의 도입을 검토

□ 관리대상 및 기준의 확대

- 2.5톤 이하의 경유자동차 배출 미세먼지(PM)와 질소산화물(NOx)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저공해화 사업 대상범위의 확대를 검토한 후 공해차량제한지역(LEZ) 운영과 연계하여 시행
 -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관리대상도 확대, NOx 농도 개선을 위해 운행 휘발유 및 가스 차량에 대한 NOx 저감사업을 추진
- PM10 이외에 NOx 기준 미달성 차량을 운행제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, 수도권의 공해차량제한지역 관리기준에 NOx 배출기준을 추가로 고려
 - 서울시 PM2.5 오염물질의 주된 배출원이 이동오염원임에 비추어 공해차량제한지역 관리기준에 향후 시행예정인 초미세먼지(PM2.5) 환경기준을 추가적으로 검토

□ 공간범역의 확대 및 지역의 세분화

- 공해차량제한지역(LEZ)의 단계별 확대
 - 1단계 : 대기관리권역,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검토
 - 2단계 :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특별대책 지역 범위 설정과 연계
 - 3단계 : 수도권 외부 등록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병행하여 시행

□ 교통수요관리 대책과 연계하여 운영

-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수준에 따라 배출등급을 분류하고, 배출등급별 운행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
- 향후 혼잡통행료, 저탄소 협력금 제도(2015.1.1 시행 예정), (기후) 환경세 부과 등 친환경 교통대책과 연계하여 추진

□ 참여를 유인하는 정보를 제공

-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유도의 정책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유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정보 안내시스템을 제안



[그림 10] 저공해화 유도 촉진 지원정보 안내시스템 마련

- 노후 경유자동차에 저공해장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해 공해차량제한지역 관련 정보, 저공해화 사업 지원 내용, 저공해화 차량의 사후 관리정보 등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

□ 공해차량제한지역 설계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추정

- 차령 7~10년의 경유자동차에서 미세먼지는 362.9톤/년 정도 배출되며, 특정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조치로 약 95톤이 감축되는 효과(약 26.3% 저감효과)가 예상
-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재설계 및 운영으로 미이행 차량들이 모두 저공해화를 이행함으로써 약 127.6톤의 감축효과를 기대
- 서울 및 수도권 교통량 기종점 자료를 바탕으로 차종별 속도배출계수를 이용하여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화 효과,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재설계 및 운영에 따른 효과를 추정
 - 서울 전역을 기준으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78톤/년,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재설계 및 운영으로 105톤/년의 추가 감축이 가능

경유자동차의 PM·NOx 배출 관리요건을 강화

□ 자동차형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추진

- 운행 건설기계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엔진 교체, DPF 장착, 엔진 정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, 자동차형 건설기계(덤프 · 콘크리트믹스 · 콘크리트펌프 트럭)에 대해 DPF 장착은 PM10 80%, 엔진 교체는 PM10 80%, NOx 45%, 엔진 정비는 PM10 · NOx 모두 30% 이하 등의 저감효과를 기대

-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 소유의 건설기계 배출 오염물질 저감방안별 경제적 지원규모는 도입 초기에는 지원규모를 높게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
- 저공해화 사업 대상을 ① 관용 건설기계, ② 공공주관 건설사업장, ③ 민간 주관 대형 건설사업장, ④ 민간주관 중형 건설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

□ 법적 ·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

- 경유자동차의 NOx 및 NO₂ 배출가스 검사기준을 추가
 - 경유자동차의 NOx 및 NO₂ 배출허용기준 마련, 운행차 정밀검사에서도 매연뿐만 아니라 NOx, NO₂ 검사항목을 추가
 - 배출허용기준, 관리항목 추가 등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,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및 중앙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
- 자동차 검사제도의 Off-cycle 모드 관리절차를 개선
 - 배출가스 검사 시 실제 운행상황이 반영되도록 검사제도를 개선
- DPF 인증제도를 보완
 - 저감장치 인증기준에 NO₂ 배출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NO₂ 증가 제한 치의 추가 검토가 필요

김운수 |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02-2149-1155

woonkim@si.re.kr